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

제출년월일 : 1997. 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국내여비규정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247호)으로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제7조 및 제9조).
- 위원의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 및 “숙박료”를 개정된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맞추어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안 별표 1).
 - 일 비 : 6,500원→10,000원
 - 숙박료 : 37,500원→41,000원

개정근거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7호)

조례안 : 덧붙임

참고사항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별표 1]의 현지교통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일 비 (1일당)	숙 박 료 (1야당)
의장·부의장	10,000	41,000
위 원	10,000	41,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